

화순군모사전송기(FAX)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6. 4. 9 화 순 군 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6. 4. 13
- 다. 상 정 일 자 : '96. 4. 29 (제44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 안 설 명 자 : 민원봉사실장 박 해 속
- 나. 제 안 이 유
 -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실과 변경으로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

다. 주 요 내 용

- 중계민원담당관 변경 : 내무과장 → 민원봉사실장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재휴)

-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부서 변경으로 중계민원담당관을 변경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 론 요 지

" 생 략 "

6. 심 사 결 과

「원 안 가 결」

- 7. 첨 부 : 화순군모사전송기(FAX)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
조례안

화순군모사전송기(FAX)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3.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라 화순군행정기구 및 직제가 '96. 1. 20자로 개정 공포되어 현 기구 및 직제에 의거 화순군모사전송기(FAX)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를 개정(정비)하려는 것임.

2. 개정근거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공포 : '96. 1. 20 (제548호)

3. 주요골자

중계민원담당관을 "내무과장"에서 "민원봉사실장"으로

화순군모사전송기(FAX)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모사전송기(FAX)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2항중 "내무과장"를 "민원봉사실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2조 (중계민원담당관) ① (생략)</p> <p>② 중계민원담당관은 <u>군은 내무과장</u> 이 읍면은 부읍면장이 된다.</p>	<p>제2조 (중계민원담당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- - 민원봉사실장 - - - - - .</p>